
코로나19 대응을 위한
금융규제 유연화 방안
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2021. 3. 9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| 1 |
| II. 추진 현황 점검·평가 | 2 |
| 가. 자본적정성 규제 | 2 |
| 나. 유동성 규제 | 4 |
| 다. 자산건전성 규제 | 7 |
| 라. 면책 등 | 8 |
| III.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| 10 |
| IV. 향후 일정 | 13 |
| [참고]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요약 | 14 |

I. 추진 배경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마련·추진 중('20.4~)

* 1차 유연화 방안 : '20.4.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'20.4.17 발표
 2차 유연화 방안 : '20.8.26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발표

<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('20.4.17)」 주요 내용 >

| [기본 원칙]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] 필요성 ○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“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” 적용 | 2] 한시성 ○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| |
| 3] 신속성 ○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| 4] 효과성 ○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으로 적극 해소 | |
| [주요 방안] | | |
| 자본 규제 | 유동성 규제 | 영업 규제 등 |
| ·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| ·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| ·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|
| ·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| ·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| ·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|
| ·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| ·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| ·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|
| ·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| ·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 | ·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|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·평가하고, 기한 종료를 앞둔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 등을 검토

< 기한 종료 예정 세부 방안 >

| 업권 | 세부방안 | 기한 |
|------|--|--------|
| 지주 |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(10%p ↑) | '21.6말 |
| 은행 |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(80 → 70%) | '21.3말 |
| |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(100 → 85%) | '21.3말 |
| 은행 |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(100 → 105%) | '21.6말 |
| |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(100 → 85%) | '21.6말 |
| 저축여전 |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(100 → 90%) | '21.6말 |
| 저축상호 | 예대율(80~110%) 한시적 적용 유예 (10%p ↑) | '21.6말 |
| 저축 |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(30~50%) 한시적 적용 유예 (5%p ↓) | '21.6말 |

※ 3.8(월) 제4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

II. 추진 현황 점검 · 평가

- ◇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 시행 완료
 - * ①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, ②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,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, 지침개정 11건 등
- ◇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

가. 자본적정성 규제

- **[공통]**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
 - **(현황)**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 적용 [법령해석*(은행('20.4.29)) 및 시행세칙 개정**(보험('20.6.30), 증권('20.6.18))]
 - * 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300%이나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등이 있는 경우 100% 적용 가능 [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[별표3] 134.바(2)]
 - ** 보험사(8~12%→6%) 및 증권사(9~12%→4.5~6%) 출자액 위험계수 인하 [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]
 - **(평가)**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

< 조치 전·후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비율 감소폭 비교 >

| 구분 | 조치 전(A) | 조치 후(B) | 차이(C)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(은행) BIS비율 | 0.27%p ↓ | 0.09%p ↓ | +0.18%p |
| (보험) RBC비율 | 1.4%p ↓ | 0.7%p ↓ | +0.7%p |
| (증권) NCR비율 | 29.5%p ↓ | 14.7%p ↓ | +14.8%p |

- **[은행]**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 조기 시행
 - **(현황)** 「바젤Ⅲ 최종안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'20.2분기부터 시행
 - * 시행세칙 개정('20.4.8) → 도입 신청 접수('20.5.29) → 승인('20.6.26)
 - **(평가)** 대부분 은행(19개 중 13개) 및 은행지주회사(8개 중 7개)가 조기 시행 중으로, 해당 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*
 - * 은행 : 평균 2.23%p 상승, 은행지주회사 : 평균 0.95%p 상승

□ **[은행]** 시스템적 중요은행(D-SIB) 선정대상*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

* 기존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子是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-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(1%p) 부과

○ **(현황)**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-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('20.6.10)하고 '21년도 선정시 반영('20.6.24)

○ **(평가)**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이 D-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 자본 적립의무(1%p)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

□ **[은행]** 「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*」 시행시기 연기

*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바젤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, 우리나라는 '19.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검토 중

○ **(현황)**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('20.4.17 보도자료 배포)

○ **(평가)**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

※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, 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,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

□ **[증권]**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* 규제 완화

* 순자본비율(NCR) = 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 / 필요유지자기자본

① **(현황)** 증권사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(단,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)

* (1)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[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'20.6.18, '20.9.5¹⁾)]

1) 당초('20.6.18) "'20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0.12월말까지"로 연장

(2)증권사가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(0~32%) 적용[금융 투자업규정 개정('20.4.29) 및 금융위 의결('20.4.29, '20.9.24²⁾)]

2) 당초('20.4.29) "'20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0.12월말까지"로 연장

- **(평가)**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*이 확대

* '20년말 기준, 8개 종투사가 총 3조4,590억원, 6개 증권사가 총 1조1,737억원 공급

② **(현황)** 일정 범위 내* 중소·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개정 ('20.7.22)

* (일반 증권사) 자기자본의 50% 이내, (중기특화 증권사) 자기자본의 100% 이내

- **(평가)**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□ [지주]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

○ **(현황)**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'21.6월말까지 10%p 확대*[규정 개정**('20.5.27) 및 금융위 의결('20.5.27, '20.12.22¹)]

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**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1) 당초('20.6.18) "'20년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1.6월말까지"로 연장

○ **(평가)**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

- 다만,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면서 지주내 신용공여 유인이 크지는 않은 상황

* 지주 계열 은행들의 자회사 신용공여 합계/평균 한도(자기자본의 20%)소진율 : ('20.3말)11.3조원/37.7% ('20.6말)11.4조원/37.3% ('20.9말) 11.2조원/35.3%

나. 유동성 규제

□ [은행]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* 한시적 완화

* 고유동성자산 /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≥ 외화 80%, 통합 100%

○ **(현황)** '21.3월말까지 외화 LCR 80%→70%, 통합 LCR 100%→85%로 인하[금융위 의결*('20.4.16, '20.8.26¹)]

*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LCR 비율을 하향할 수 있음[은행업감독규정 26조①2호 등]

1) 당초('20.4.16) "'20.9월말까지"였던 조치 기한을 "'21.3월말까지"로 연장

- **(평가)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**
 -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 완화
 - * 단기가산금리(bp) : '20.2월(1.7) → 3월(62.0) → 4월(52.3) → 5월(1.1) → 12월(2.9)
 - 중장기가산금리(bp) : '20.2월(38.4) → 3월(65.6) → 4월(134.2) → 5월(90.1) → 12월(39.4)
 - 스왑레이트(% 3M) : '20.2말(△0.57) → 3말(△1.42) → 4말(△0.78) → 5말(△0.05) → 12말(△0.11)
 -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*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**에 기여
 - * 국내은행 통합 LCR(평균) : ('20.3월) 111.5% → ('20.12월) 96.4% [**15.1%p ↓**]
 - ** 국내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 : ('19) +48.8조원 → ('20) +114.0조원 [**134% ↑**]

□ **[은행] 예대율*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**

* 원화 대출금(가계대출×1.15+개인사업자대출×1+법인대출×0.85) / 원화 예수금 ≤ 100%

- **(현황) '21.6월말까지 5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('20.4.29)**
 - 한편, '20~'21.상반기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(100%→85%) [은행업감독규정 개정('20.6.24, '20.12.22¹⁾)]
 - 1) 적용대상을 당초('20.6.24) "'20년중" 취급대출에서 "'21.상" 취급대출까지 확대
- **(평가)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**
 - * 예대율 : 2.1%p ↑ [('20.3월) 95.8% → ('20.12월) 97.9%]
 -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 기여
 - * 은행권은 '20.1~12월중 약 12조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추가 여력 확보

□ **[산은]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* 한시적 적용 유예**

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 : 안정자금가용금액 /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≥ 100%

- **(현황) 산은의 특수성*을 고려하여 '22.6월말까지 20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('20.5.8, '20.9.11¹⁾)**
 - *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감안
 - 1) ('20.5.8) "90% 이내, '21.6월말까지" → ('20.9.11) "'80% 이내, 22.6월말까지"

- **(평가)**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* 확대에 기여

* '20년 중 코로나19 지원자금 약 8.9조원 집행

□ **[보험]**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

- **(현황)**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* 발급('20.4.21)

* 보험업법시행령상 RP매도가 허용되는 "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"에 해당함을 명시

- **(평가)**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·증안펀드 참여에 기여

* 보험사 채안·증안펀드 출자금 중 약 7.2%를 RP매도를 통해 조달('20년말 기준)

□ **[보험]**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

- **(현황)**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시*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 중

* '21.6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경영실태 평가('21.9월)까지 적용

- **(평가)**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

* '20.9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평가('21.1월) 결과 평가대상 53개사 중 45개사 (85%)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

□ **[저축,여전]** 유동성비율* 한시적 적용 유예

*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/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\geq 100%

- **(현황)**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*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**

*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('20.4.1~)」에 따른 지원대상

** (저축) 비조치의견서('20.5.7), (여전) 공문 발송('20.5.27)

- **(평가)** 유동성비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* 실시에 기여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월말 기준) : (저축) 4,721억원, (여전) 3,706억원

□ [저축, 상호] 예대율* 한시적 적용 유예

* 대출금 / 예수금 ≤ (저축은행) '20년: 110%, '21년: 100% (상호금융) 80~100%

- (현황)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*

* (저축은행) '20.5.7, (상호금융) '20.4.29

- (평가) 예대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* 실시에 기여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월말 기준) : (저축) 4,721억원, (상호) 3,210억원

다. 자산건전성 규제

□ [공통]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*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

* 쉰 금융권은 '20.4.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실시→ 건전성 분류 하향에 따른 총당금 적립부담, 미수 이자의 수익인식 가능성 등 우려

- (현황)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(총당금 추가 적립 불요)할 수 있고,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*

* (은행·보험) '20.5.4, (저축은행) '20.5.7, (여전·상호) '20.4.29

※ 쉰 금융권의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→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

- (평가)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*하는데 기여

*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원금·이자상환 유예 실적('21.1월말 기준)
: (만기연장) 121.2조원(37.1만건), (원금상환 유예) 9.0조원(5.7만건),
(이자상환 유예) 0.2조원(1.3만건)

□ [여전]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* 개선

* 기존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"고정 이하"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반면, 저축은행·상호금융업은 다른 소득 유무, 영업 계속 여부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"요주의이상"으로 분류 가능

- **(현황)** 폐업중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규정 개정('20.4.29)
- **(평가)** 실제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라. 면책 등

□ [공통]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

- **(현황)**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*하여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('20.4.16)
 - * (대상)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
(요건)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
(절차)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
- **(평가)**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[공통] 경영공시·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

- **(현황)**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·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*
 - * (은행·보험·금투) '20.5.4, (여전·저축·상호) '20.4.29
- **(평가)**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적 불확실성 제거 및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
 - * 현재('21.1.12)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공시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

□ [보험]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(TM) 절차 준용 허용

- **(현황)**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·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('20.4.10)
 - * 단, 녹취내용 점검, 청약철회기간 연장(+45일)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

- **(평가)**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보험영업 위축 방지에 기여

□ **[여전]** 카드사 레버리지* 한도 확대

* [총자산 - 차감항목(온렌딩대출)] / 자기자본 ≤ 6배

- **(현황)**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(6배→8배*) (여전업감독규정 개정, '20.9.25)
- * 단,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의 30% 이상 배당시 7배로 축소
- **(평가)** 카드사의 총자산 증대여력이 확대되어 적극적인 코로나 지원에 기여

□ **[저축]**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* 한시적 적용 유예

* 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(수도권 50% 기타 40~30%) 유지 의무

- **(현황)**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('20.5.7)
- **(평가)**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
- * 저축은행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실적('21.1월말 기준) : 4,721억원

□ **[정책금융기관]**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**(현황)**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하도록 평가지침* 개정('20.4.29)
- *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
- **(평가)**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*에 기여
- * 자금공급 실적: ('19) 206.2조원 → ('20) 253.6조원 (23%↑)
(산은·기은·수은 실적 합계)
- ※ '21.6~7월경 진행예정인 '20년도 경영평가에 반영 예정

Ⅲ.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

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쉰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

- LCR 등 기한 도래가 예정된 방안의 기한을 연장

1 보완 필요성

□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화 방안 연장 필요

-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할 필요
- 특히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와 직·간접 연계되어 있는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* 등은 최소 금년말까지 기한 연장 불가피

* “[은행]통합LCR, 예대율, [저축·여전]유동성비율, [저축·상호]예대율, [저축]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” 유연화는 만기연장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지연 등을 고려한 방안

2 구체적 방안

① 「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*」 기한 연장

- * '21.6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%p 확대
 -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
 -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- 한도소진율을 감안할 때 연장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'21.9월말까지 기한 연장

➔ (기한) “'21.6월말” → “'21.9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 : 금융위 의결('21.5월)

② 「은행 LCR 한시적 완화*」 기한 연장

* '21.3월말까지 외화 LCR 80%→70%, 통합 LCR 100%→85%로 인하

- **(통합 LCR)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,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 상 최대기간(6개월) 연장**

* 통합 LCR 현황('20.12월 기준, %) : (국내) 96.4, (시중) 93.4, (지방) 99.5, (특수) 103.2
- 시중은행(6개) 중 4개, 지방은행(6개) 중 3개, 특수은행(4개) 중 1개가 100% 하회

- **(외화 LCR) 외화LCR은 통합LCR의 일부이므로 병목 현상*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LCR과 동일하게(6개월) 연장**

*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완화 효과 희석 우려

** 외화 LCR 현황('20.12월 기준, %): (국내은행) 111.2, (일반은행) 107.4, (특수은행) 127.6

➔ **(기한) “'21.3월말” → “'21.9월말”까지로 연장**

※ 조치 사항 : 금융위 의결('21.3.8)

③ 「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*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**」 기한 연장

* '21.6월말까지 예대율(10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** '21.6월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→85%로 인하

- **(은행 예대율)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,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용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**

* 은행 예대율 현황('20.12월 기준, %) : (국내은행) 97.9, (시중은행) 99.5, (지방은행) 96.9
- 시중은행(6개) 중 2개가 100% 상회

➔ **(기한) “'21.6월말” → “'21.12월말”까지로 연장**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1.3월)

- **(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)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,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'21.9월말까지 기한 연장**

➔ **(기한) “'21.6월말” → “'21.9월말”까지로 연장**

※ 조치 사항: 은행업감독규정 개정('21.5월)

④ 「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*」 기한 연장

* '21.6월말까지 유동성비율(10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,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

* 유동성비율 현황('20.12월말 기준, %) : (저축은행) 149.9, (여전사) 314.4

➔ (기한) "'21.6월말" → "'21.12월말"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·안내공문 재발송('21.3월)

⑤ 「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*」 기한 연장

* '21.6월말까지 예대율(80~110%) 10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,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

* 예대율 현황('20.12월 기준, %) : (저축은행) 93.5, (상호금융) 73.0

➔ (기한) "'21.6월말" → "'21.12월말"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1.3월)

⑥ 「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*」 기한 연장

* '21.6월말까지 의무여신비율(30~50%) 5%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

-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,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

*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현황('20.12월말 기준) : 62%

➔ (기한) "'21.6월말" → "'21.12월말"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'21.3월)

IV. 향후 일정

- 보완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
 - 외화 및 통합 LCR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: 3.8일 금융위 의결
 - 은행 예대율, 저축은행·여전사 유동성비율, 저축은행·상호금융 예대율,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: 3월중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 등
 -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: 5월중 금융위 의결
 - 은행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: 5월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
-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·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용 기간을 부여
 -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·방법 등은 방역상황, 실물경제 여건,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·점진적으로 추진
- 한편,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
 -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

| 업권 | 세부방안 | 추진 현황 | 향후 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자본 적정성 규제 | | | |
| 공통 |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| ·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·보험사·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 | - |
| 은행 | 「바젤Ⅲ 최종안」 조기 시행 | · '20.2분기부터 시행 | - |
| 은행 | 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| · '21년도 D-SIB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 제외 | - |
| 은행 |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| · 시행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 | - |
| 증권 |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| 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0~32% → 0~16%) | 기 종료 |
| |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| · '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100% → 0~32%) | 기 종료 |
| |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| · (영구적으로) 중소·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 | - |
| 지주 |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| · '21.6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* 자회사 → 다른 자회사 각각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자회사 → 다른 자회사 전체(자기자본의) 20% → 30%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.9월말 |
| 나. 유동성 규제 | | | |
| 은행 |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| · '21.3월말까지 80% → 70% | 적용기한 연장 '21.3월말 → '21.9월말 |
| |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| · '21.3월말까지 100% → 85% | 적용기한 연장 '21.3월말 → '21.9월말 |
| 은행 |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| · '21.6월말까지 5%p 완화(100→105%)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년말 |
| |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| · '21.6월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(100 → 85%)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.9월말 |
| 산은 |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| · '22.6월말까지 20%p 완화(100→80%) | - |
| 보험 | 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| · 법령해석 발급 | - |
| 보험 |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| · '21.6월말 기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('21.9월) 시까지 반영 | - |
| 여전 저축 |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| · '21.6월말까지 10%p 완화(100→90%)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년말 |
| 저축 상호 | 예대율(80~110%) 한시적 적용 유예 | · '21.6월말까지 10%p 완화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년말 |
| 다. 자산 건전성 규제 | | | |
| 공통 |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| · 법령해석* 안내 공문 발송 * 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 이자수익 인식 가능 | - |
| 여전 |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| ·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'요주의' 이상 분류 허용 | - |
| 라. 면책 등 | | | |
| 공통 |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| · 검사·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 | - |
| 공통 |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| · 비조치의견서 발급 | - |
| 보험 |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| ·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 | - |
| 여전 |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| · 레버리지 한도 확대(자기자본 比 6배→8배) | - |
| 저축 |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(30~50%) 한시적 적용 유예 | · '21.6월말까지 5%p 완화 |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1년말 |
| 정책 금융 | 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 | · '20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, 공급실적 우선 평가 | - |